

인권정보자료실
M.a.f.13

찬드라 꾸마리 구릉 실종사건 진상조사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대책 기자회견

이란주
<기자회견 순서>

- 경과보고 이란주(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김동훈(경실련 운영위원장)
- 네 팔공동체의 입장 발표
- 성명서 낭독
- 질의 응답

- ▶ 일시 : 2000년 3월 29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 장소 : 경실련 강당(중구 정동 정동빌딩 별관 5층)
- ▶ 주최 :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개요

본 자료는 1993년 11월 실종된 네팔인 찬드라 쿠마리 구롱(Chandra Kumari Gurung, 여, 1956년 Nepal Ghandruk Kaski에서 출생)이 2000년 3월 18일 정신병원에서 발견되어 부친 외국인노동자의 집과 경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임.

경과 보고

1992. 2. 9. 단기비자로 한국 입국

1993. 11. 21.(일요일)-서울 광진구 자양1동 613-31 소재 대신섬유공업에서 일하던 중 실종.

당시 찬드라는 외국인노동자 출국유예조치로 합법적인 체류 상태였음.

-12시 10분 자양동 620-17 앞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112 신고되어

자양 1동 파출소로 임의동행

-오후 7시 30분 파출소에서 청량리 정신병원 옮겨짐

(근거 공문 제목 : 행려환자 수용의뢰, 문서번호 : 02633-38)

1994. 7. 20.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시립부녀자보호소로 옮겨짐.

1994. 7. 28. 서울시립부녀자보호소에서 용인정신병원으로 옮겨짐.

2000. 3. 18. 용인정신병원의 황태언 박사가 이근후 박사(이화 네팔 의료봉사단)에게 연락하고, 이 소식을 재한네팔인공동체(NCC) 총무에게 알려 찬드라의 생존을 확인하게 됨.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과 부친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공동 조사 시작.

2000. 3. 19. 오전 11시에 용인정신병원을 방문하여 찬드라와 면회를 함.

3. 21. 용인정신병원 담당의사 만남

3. 22. 서울시립부녀자보호소 방문

3. 23.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찬드라 일하던 대신섬유 한국인 직원과 전화통화로 당시의 찬드라 상태 파악.

3. 25. 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방문하여 진상조사 요구.

청량리 정신병원 방문.

3. 26. 실종당시 제작, 배포했던 포스터 발견

(포스터에는 연락처에 '동부경찰서'가 명시되어 있음)

3. 27. 청량리 정신병원 방문하여 의사와 면담.

3. 28. 이석태 변호사와 면담하고 법적 대응책 논의

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 연락하여 수사 진행 상황 문의

*현재 찬드라 쿠마리 구롱은 용인 정신병원 재활병동에서 한국인 '선미야'라는 이름으로 1종 생활보호대상자로 치료를 받고 있다.

*실종 당시 제작·배포했던 포스터는 뒤에 첨부되어 있음.

주요 관계자 면담 내용 요약

1. 용인정신병원 찬드라 담당의사(3월 21일 면담)

1998년 5월에 재활병동으로 왔다.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약간의 우울증 증상이 있을 뿐이다. 현재 병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네팔인이라고 하여 출입국관리소 등에 공문까지 보냈으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연락만 받았고, 확인작업을 전혀하지 않았다(당시 찬드라의 영문 철자가 틀리게 표기되어 확인되지 않았음). 혹시 아는 파키스탄인이라면 언어가 통하지 않을까하여 찬드라와 면담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대병원의 이근후 박사가 네팔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여 한국에 있는 네팔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연락을 취했다. 다행히 네팔 친구들을 찾게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2. 서울시립부녀자보호소 직원(3월 22일 면담)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오게 된 후 8일 동안 있었다. 행려환자로 처리되어 있었고, 다시 정신감정을 받아 정신질환이 있어 용인정신병원으로 보냈다. 면담 과정 중에서 파출소에서 청량리정신병원으로 보낸 공분을 발견했음. 농부경찰서장의 직인이 찍힌 이 공분의 제목은 <행려환자수용의뢰>였고, 발견 일시와 장소, 이유가 나와있었음.

3. 찬드라 근무 공장 한국인 부장(3월 23일 전화 면담)

실종 직전까지 찬드라는 근무를 잘하고 있었다. 어떠한 정신질환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 당시 외국인노동자 출국유예조치로 출입국관리소에서 합법적으로 비자연장을 받은 상태였다. 찬드라의 여권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실종후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했다. 공장에서는 '찬드라'로 불렀고, 실종된 후 네팔 친구들이 신고를 했다. 같이 있었던 친구가 찬드라의 실종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찾았더니 다행이다.

4. 농부경찰서 부청분감사관(3월 25일 면담)

신분을 보고서야 사건을 알았다. 아마 파출소에서 바로 정신병원으로 간 것 같다. 근거 자료는 근무일지 정도일텐데, 근무일지 보존연한이 3년이라 폐기되었을 것이다. (외국인 실종의 처리 과정을 묻자) 잘 모르겠다. 소년계인가? 외사계에 전화해보겠다. 외사계에서도 알아보고 전화해주겠다고 함. 아무튼 조사를 해보겠다. (언제 조사가 완료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 한달 정도 걸릴 것 같다.

5. 청량리 정신병원 의사(3월 27일 면담)

1993년 11월 21일 저녁 7시 30분경에 자양 1동 파출소 이근배 경장이 데리고 왔다. 당시 수용의뢰서에 성명, 주소 모두 불상이라고 나왔다. 찬드라의 당시 상태는 좋지 않았다. 개인위생이 미흡했고, 고집이 강했다. 직원의 다리를 붙잡고 보내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

네팔 사람이라고는 입원후 1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네팔어로 편지를 쓰라고 하였으나 글을 쓰지 못했음(2000년 3월 27일 조사 결과 문맹은 아니었음). 병원 내에서는 찬드라가 외국인인시 아닌시에 대해 논란이 많았었다.

입원 후 10일 정도가 지난 후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 근배 경장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규정상 외국인이라고 판단되면 우선 경찰에 통보를 하고, 경찰은 출입국관리소에 연락하게 된다. 출입국관리소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경찰에 외국인이라고 연락을 하면,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다.

1종 생활보호대상자로 된 경위는 병원에 와서 2 3일이 지난 후 정신질환자로 판단하여 관할 구청에 신청해서 된 것이다. 우리 지원이 찬드라 면담하면서 '선미야'라는 한국어름이 생긴 것 같다.

6. 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3월 28일 전화 면담)

(조사 진행 정도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관련 자료는 보존기한이 넘어 모두 폐기되었다. 현재 자양 1동 파출소에도 자료가 없다. 폐기 대장은 따로 없다. 그래서 현재 수사를 진행시킬 수 없다. 어떠한 것도 알아낸 것이 없다.

향후 대책

1. 찬드라의 슬픔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찬드라 꾸마리 구룡이 초기 경찰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6년이 넘는 시간을 정신병원에 있었다. 외국인이기에 겪는 차별과 냉대에도 이주 노동자들은 견디기 힘든데, 자신의 탓이 아닌 경찰의 잘못된 조치로 인해 정신병원에 가게된 것에 대한 배상과 정부의 사과가 당연한 것이다.

2. 찬드라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찬드라 실종 사건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불심검문, 부전취식, 불법체류, 범죄혐의 등으로 이주 노동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초기부터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시민단체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민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한다. 이 위원회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종교·시민단체의 인사로 구성하여 더 이상 한국이 이주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팔공동체의 입장

시토우라 (재한네팔공동체 총무)

찬드라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으니 가급적으로 빨리 네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7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을 본인과 가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서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격리된 분제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이에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명서)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에 관한 우리의 입장

-한 이주 노동자가 당한 6년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지난 3월 18일, 우리는 실로 엄청난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6년전 1993년 11월 21일 실종된 네팔인 찬드라 꾸마리 구룽이 정신병원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6년전 그렇기에 안타게 찾았던 친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도 잠깐이었다. 오히려 찬드라가 보낸 6년의 세월을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낀다.

그동안 찬드라가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게된 경위를 조사하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외국인, 특히 제3세계에서 온 이주 노동자에 대해 차별과 무관심을 보내왔는가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는 경찰의 반인권적인 행동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이 범 죄혐의가 있을 때 통역을 통해 정확한 사건 조사를 진행해야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경찰은 찬드라 씨가 한국말을 모름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지세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뿐만아니라 또한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본인이 스스로 네팔인이리고 진술하였고, 이에 담당의사가 해당 경찰서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을 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음으로써 찬드라가 6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게 만들었다.

1993년 찬드라의 실종 당시 동료 네팔인과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는 동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포스터까지 만들어 백방으로 수소문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경찰 관내에서 불과 1주일전에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보낸 외국인이 있었고, 또한 청량리 정신병원으로부터 네팔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이 있다며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확인 작업조차 제대로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용인 정신병원에서 출입국관리소에 공문으로 네팔인이 있다고 선했으나 출입국관리소는 단지 영문 철자가 약간 틀리다는 이유로 병원에 확인 소차 안했다는 것은, 단속기간을 정해 눈에 불을 켜고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할 수 없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철저한 배타와 무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6년이 넘게 정신병원에서 방치되었던 찬드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그 배타와 무관심,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분명히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는 강력하게 찬드라와 같은 인권유린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한국 정부는 찬드라가 지낸 지난 6년의 고통을 사과하고 배상하라.
- 경찰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제도적 외국인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라.
- 한국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민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라.

2000년 3월 29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유혜영씨 (홍 8쪽)

보 도 자 료

부천외국인노동자이시 진화032-654-0664 전송002 CGO 0077
bmwh@chollian.net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84-37 (421-112)

수 신 : 가 언론사
발 신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일 시 : 2000년 5월 26일
제 목 : 네팔인 여성 찬드리 구마리 구릉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항상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93년 11월 21일 실종되어 6년 4개월동안 정신병원에 격리되어 있다가 2000년 3월 18일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된 네팔인 여성 찬드리 구마리 구릉이 대한민국의 청량리 정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 소장은 5월 26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내게 될 것이며, 청구액은 6년 4개월동안 노동을 했더라면 원고가 임금으로 벌어들인 38,000,000원비 위자료 등 60,000,000원을 합쳐 88,000,000원입니다.
4. 찬드리 구마리 구릉은 소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치음 피출소로 연행한 경찰과, 네팔인임에도 통역을 대동하지않고 심박한 신원을 확인하지않아 한국인 정신병자로 다정한 잘못등 업무상 피살과 부주의,
 - 실종신고후 동부경찰서에 접수했는데도 김은 관할인 동 경찰서나 관할 피출소에서 이를 모두 간파하고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행위 등,
 - 출입 관리사무소에서는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중일 때 이름과 여겨번호를 확인 하이 조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불명으로 회신함으로써 조기 퇴원을 불가능하게 한 점,
 - 또한, 초기 본인을 인계받았던 청량리정신병원에서 외국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불안에 떠는 위형을 보고 본인을 정신병시로 오인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판계 투약과 치료를 하는 등 강제로 행위를 함으로써 그 후에도 계속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등을 들이
 - 이러한 관계공무원 또는 담당의사 등의 불법행위가 결합되어 재산적, 정신적 손해등 입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현재 찬드리 구마리 구릉은 소송준비를 위하여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6월 초 네팔의 가족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끝.

첨부 : 소장

소 장

원 고 찬드라 쿠마리 구룽(Chandra Kurnari Gurung)

네팔 까스키시 간드목 -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이정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5 흥국생명빌딩 7층

비 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정 길

2. 장 동 산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6번지 청량리정신병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환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지급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문영 김창국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이정희

전화 : 567-2310

팩스 : 568-3439

청 구 원 인

1. 원고의 국내 근무 경위

원고는 네팍국민으로서 네팍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습하의 6남매 중 장녀로 1956년 출생하여 네팍에서 카페트를 만들어 파는 일에 종사하다가 1992. 2. 경 한국에 와 적법하게 체류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소재하는 대신섬유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에서 근무자로 성실하게 일하여 왔습니다.

위 업체에서 일하면서 원고는 기숙사에 숙식하고 있었고, 여권은 위 대신섬유측에 맡겨 놓고 있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위와같이 국내에서 체류하여 생산직 근로에 종사하던 중 1993. 11. 21. 일요일 원고는 일을 쉬는 까닭에 위 자양동 숙소 근처를 산책하다가 점심 부럼이 되어 한 노점상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전에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던 원고가 돈을 분실했는지 수중에 돈이 없어 식사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노점상 주인이 원고를 채근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때문에 제대로 원고의 사정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식당주인은 원고가 돈이 없으면서도 일부러 음식을 시켜 먹었으며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얼버무리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오해하여 곧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동부경찰서 관내의 자양1동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위 노점상에 출동하여 원고를 동 파출소로 연행해 갔습니다.

나. 잠시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나왔다가 노점상과의 실랑이 끝에 갑자기 한국 경찰에 연행된 원고는 언어 장벽에다가 한국의 실정에 무지한 탓으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경찰관이 한국어로 묻는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다만 네팔어로 자신이 네팔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라는 등의 몇마디 말 외에는 도무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위 파출소에서는 원고가 네팔국민인 이상 적절한 봉역을 대동하여 우선 원고의 신원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고 생김새가 한국 여성과 비슷하다는 점으로부터 원고를 한국인으로 착각하고 아울러 원고가 행색이 보잘 것 없는 상태로 떨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정신질환이 있는 행려병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그리하여 위 파출소는 원고를 당일 저녁 무렵까지 위 파출소 내에 유치하고 있다가 "선미야" 라는 한국인 이름을 붙여 원고를 피고 장동산이 운영하는 청양리정신병원에 인계하였습니다. 동 병원의 담당의사 또한 동의를 대동하여 원고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함이 없이 위 파출소의 말만 믿고 원고를 한국인 정신병자로 단정한 후 그로부터 8개월 가량 위병원에 강제로 입원 유치시켰습니다.

라. 원고는 이 뒤 시립부녀자 보호소를 거쳐 용인정신병원으로 인계된 후 계속 입원 상태로 있다가 2000. 3월경에야 뒤늦게 국내에 거주하는 네팔인 공동체 등을 통하여 비로소 신원 확인이 되어 6년 4개월 가량의 악몽같은 기나긴 정신병원 입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 원고가 이처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네팔국적의 미혼 외국인 근로자로서 상당 기간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여 오다가 뜻하지 않게 그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정신병원에 유치되어 입원해 있었던 이유는, 앞서 본 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또는 담당의사

등의 불법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측은, 1) 무엇보다도 처음 원고를 파출소에 언행한 담당 경찰관이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원고가 नेपाल국민임에도 통역을 대동하여 정확한 신원을 확인함이 없이 원고를 한국인 정신병자로 단정한 잘못을 저질렀고, 2) 그 뒤 원고의 지인들이 실종자 신고를 동부경찰서에 접수시키고 원고를 찾는 포스터를 인근 주변에 다수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경찰서나 관할 파출소에서 이를 모두 간과한 채로 원고를 그대로 청량리정신병원에 계속 입원시켰으며, 3) 원고가 그후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중 동 병원이 원고의 이름과 여권을 확인하여 출입국 관리소에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관리소가 신원불명으로 회신함으로써 조기 퇴원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바. 한편 피고 상동산측은, 위 피고가 운영하는 청량리정신병원이 환자와의 대화를 위주로 하는 정신병 전문진단 및 치료 병원인만큼 원고가 외국인인 사실과 정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조기에 알 수 있었고, 원고가 수시로 자신이 नेपाल인임을 밝혔는데도 원고를 인계받을 당시의 위 파출소 보고와 원고가 당시 제대로 말을 못하고 불안에 떠는 외형을 보이고 있는 점만으로 당연히 원고를 정신병자로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에/이어 동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각종 정신병 관계 투약과 치료를 하는 등 강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후에도 계속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현명 김장국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용관 김기정 도재영 진선미 이경희

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2000. 5. 26

가. 재산적 손해

원고는 위와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6년 4개월 남짓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경찰에 연행당시인 1993. 11. 21.부터 원고가 용인정신병원에서 퇴원한 2000. 3. 29.까지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적정한 인금을 받으며 근로해 왔을 터인데 위 기간동안 이를 모두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그 구체적 월 임금액과 합계액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월 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 돈 38,000,000원(500,000원×76원)을 청구합니다.

나. 정신적 손해

원고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적상 명백한 바, 원고는 그 위자료 금액으로 피고들에게 돈 5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합계액인 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강제1호증 인증서

기타 필요한 입증방법은 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1. 소장 부분 2통
- 1. 위 입증방법 1통
- 1. 법인등기부등본
- 1. 위임장
- 1. 담당변호사 지정서
- 1. 납부서

2000. 5.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창 국

변호사 최 병 모

변호사 이 석 태

변호사 김 형 네

변호사 조 용 환

변호사 김 기 중

변호사 도 재 형

변호사 진 선 미

변호사 이 정 희

서울지방법원 귀중

범무법인 막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현명 김장국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승환 김기홍 도재형 진선미 이경희

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0